부 록 Ⅰ: 보험금 청구서류 사례

〈부록 표 Ⅰ-1〉 보험금 청구서류 사례

구분	구비서류
공통	- 보험금청구서 (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) - 청구인 신분증 사본
	(필요 시) 추가서류 -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: 가족관계 확인 서류 - 대리인 청구 시: 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),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 - 재해사고시: 사고입증 서류
사망	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대조필 포함)
	(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 요청서류 - 상속관계 확인서류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 -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
입원	- 진단서 [단, 50만 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 -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 포함 경우 및 실손의 경우 제외) *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추가
통원	- 진단서, 통원확인서, (통원일자별)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차트 등 진단명,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[단, 3만 원 이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 제외)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로 갈음] *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, 약제비계산서(영수증) 추가
장해	- 후유장해진단서
	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- 만성신부전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 - 사지절단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-ray필름 첨부 - 인공관절치환술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 - 비장, 신장적출: 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
진단	- 진단서 - 진단사실 확인서류([예시] ①암: 조직검사결과지, ②뇌졸중, 급성심근경색: 정밀검사결과지(CT, MRI, 심전도 등))
골절	-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
수술	- 진단서,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
응급비용	- 119구급구조증명서(가족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)

부 록 Ⅱ: 공·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

〈부록 표 Ⅱ-1〉 공·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

분류	국민건강보험	실손의료보험	차이
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	·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· 피부질환: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탈모 등 · 비뇨생식기 질환: 발기부전, 불감증,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 · 단순 코골음 · 질병없는 단순포경 · 안과질환: 검열반 등 · 기타 이에 상당하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	·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· 피부질환: 주근깨, 다모, 무모, 백모증, 딸기코(주사비), 점, 사마귀, 여드름, 노화탈모 등 · 비뇨생식기 질환: 발기부전, 불감증,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 · 단순 코골음 ·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 · 안과질환: 검열반 등	없음
외모개선 목적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	·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입술, 주름살제거술 등 ·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·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·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· 안경,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는 시력교정술 · 기타 이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	·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 지방흡입술, 주름살제거술 등 · 사시교정,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· 안경,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는 시력교정술 ·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·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	없음

〈부록 표 Ⅱ-1〉 공 · 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(계속)

종류	국민건강보험	실손의료보험	차이
예방진료로서 사용되는 행위 · 약제 및 치료재료	· 본인희망에 의한 건강검진, 예방접종	· 건강검진, 예방접종, 다만,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·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	없음
	· 구취제거, 치아 착색물 제거, 치석제거 · 치아우식증 예방진료 · 멀미 예방, 금연 진료	·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	· 멀미 예방, 금연 진료 실손 면책
	· 태아의 이상유무 진단 위한 세포유전학검사	· 임신출산 관련 질병은 면책 질병	없음
	·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 진료	·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·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TV시청료, 전화료, 제증명료 등)	없음
	· 기타 이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	· 별도 규정 없음	· 실손은 예방진료라 해도 질병치료 목적의 경우 보상
건강보험 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	· 한방 물리요법, · 한방생약제제: 한약첩약,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	·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	· 영양제, 종합비타민제, 호르몬 투여, 보신용 투약 실손 추가 면책

〈부록 표 Ⅱ-1〉 공·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서비스(계속)

종류	국민건강보험	실손의료보험	차이
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용·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	· 5인 이하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· 의료법 제46조에 따른 선택진료	· 별도 규정 없음	· 실손 보장
	· 급여대상 혹은 비급여대상으로 결정·고시되기 전까지의 신의료기술	· 별도 규정 없음	· 실손 보장
	· 장애인 보험급여 이외의 보장구(보조기, 보청기, 안경, 콘택트렌즈 등) · 75세 이상의 틀니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	· 의치, 의수족, 의안, 안경, 콘택트렌즈, 보청기, 목발, 팔걸이,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	없음
	· 보조생식술(인공수정에 따른 합병증 치료는 급여) · 친자확인 진단	· 보조생식술(체내외 인공수정을 포함) · 친자 확인 진단	· 인공수정에 따른 합병증 치료는 모두 실손 면책
	–	· 불임검사, 불임수술, 불임복원술	· 임신·출산은 모두 실손 면책
	· 인공유산(치료목적 혹은 인공유산에 따른 합병증 치료는 급여)	· 인공유산	· 인공유산에 따른 합병증 치료 모두 실손 면책
	· 장기 등 이식에 필요한 장기 운반비용	· 별도 규정 없음	· 질병치료목적에 해당된다면 보상(실무의견)
	·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 비용	·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,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증독증상은 면책	없음
	·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·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/재료 등	· 별도 규정 없음	· 고시된 행위, 치료재료에 대해 실손은 법정비급여로 간주하여 보상

주: 간병비,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(HIV)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 면책임.
자료: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(비급여대상)(개정 2013. 9. 13).